
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

마이데이터 발전방안(案)

2026. 8.

금 융 위 원 회

금융데이터정책과

목 차

I. 추진배경	1
II. 현황 및 문제점	3
III. 개선방안	6
1.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	서비스 범위 확대
2. 통합관리에서 실행까지, My AI Agent 도입	서비스 기능 확대
3.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데이터 활용	데이터 활용 확대
IV. 향후 추진계획	14

I. 추진배경

- '22.1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^{본인신용정보관리업}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 이후, 글로벌 기술 발전, 규제 동향 등에 큰 변화
- '22년말부터 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되었고, 이후 에이전틱 AI, 퍼지컬 AI 등 AI 관련 기술 급속히 확산·발전
- 이러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주요국들의 데이터 규율 방점은 기존 개인정보보호에서 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창출로 전환 중

〈 EU 데이터 관련 입법 동향 〉

① [1단계]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구현

-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('18.5월 시행) :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, 프로파일링 대응권·개인정보 이동권·개인정보 삭제요구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규정

② [2단계] 데이터 독점 방지 통해 데이터 경제의 가치 창출 및 공정한 배분 구현

- Digital Market Act('24.3월 시행) : 대형 플랫폼의 사업자 데이터 접근권 보장 의무 등 규정(예: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 보장 등)
- Data Act ('25.9월 시행) : 데이터 보유자의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의무 등 규정(예: 사물인터넷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손쉽게 무상제공 받을 권리 등)

③ [3단계]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부담 완화 등 규율 정비

- Digital Omnibus ('25.11월 제안, 개정중) : AI 개발·운영 위한 개인정보 활용 허용, 재식별 가능성 없는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배제 등 GDPR 완화

〈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 〉

▶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('26.7월 개정/28.7월 시행 예정)

- AI 기술 개발, 통계 작성 등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, 내용 등을 공표한 경우, 개인정보 및 공개된 민감정보 활용 허용 (본인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가능)

☞ 데이터 소유·통제권 보장에서 데이터 활용권 보장으로 발전 중

⇒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금융 마이데이터가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

II.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현황 및 문제점

1 현황

□ (법적근거) '20.1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*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** 도입

* 금융회사 등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을 요구할 권리(법 §33의2)

**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(법 §2. 9의2)

⇒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·종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조회·열람하는 서비스 제공

□ (영업현황) '26.7월말 기준 금융회사·핀테크 등 57개사가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영업 중(금융회사 38, 비금융 19)

* [금융] 은행(10), 보험(3), 금투(10), 여신(10), 저축은행(2), 상호금융(1), CB(2)
[비금융] 핀테크(18), 공공기관(1)

** LG유플러스, SK플래닛 등 12개사는 본허가 이후 수익성 부족 등을 이유로 폐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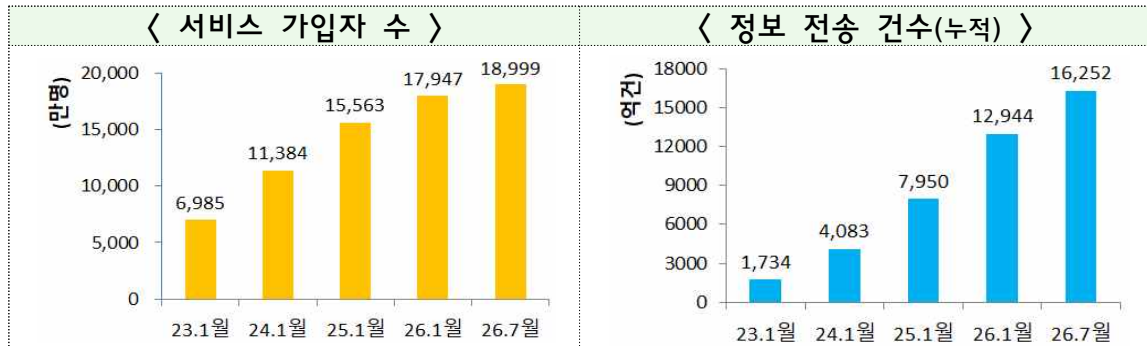
○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^{고유} 외에 금융상품 추천·중개^{겸영}, 데이터분석·컨설팅^{부수} 등 서비스 제공

< 마이데이터 사업자 제공서비스 예시 >

업	서비스 예시	근거(신용정보法·令)
고유	▶ 은행, 카드, 증권, 보험, 대출정보 통합조회 ▶ 대출이자 납부일, 카드대금 결제일 등 주기적 안내 등	개인신용정보의 통합조회제공
겸영	▶ 이용자 정보기반 최저금리·최대한도 대출상품 추천·중개	대출의 중개·주선
	▶ 모바일·인터넷 등 통신요금제 맞춤 추천 및 중개	비금융법률
	▶ AI를 활용한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 제시	투자자문업
부수	▶ 이용자 결제내역 기반 소비패턴 분석, 맞춤형 매장·혜택 안내	데이터분석·컨설팅
	▶ 이용자 자산 및 유사집단 자산통계 비교·분석 및 컨설팅	
	▶ 보험·건강정보 기반 맞춤형 보험상담 서비스 연계	데이터 판매·중개

□ (이용현황) '26.7월 기준 약 1억 8,999만명(중복포함)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중이며, 누적 전송 건수 약 1조 6,252억건*

* 일평균 전송 건수 : 약 9억 7,140만건('22.1~'26.7월)



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절차 〉

- ① [전송요구]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(예: 금융회사)에게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신용 정보 제3자 전송을 요구



- ② [본인인증] 정보주체는 본인인증을 통해 개별 정보제공자 또는 다수의 정보제공자에게 전송요구권 행사 가능

- ③ [정보전송] 정보제공자는 스크레이핑 방식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API 방식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전송

□ (정보제공 현황) 약 698개 정보제공 기관이 약 110여개 API*를 통해 약 770개 데이터 항목을 사업자에게 제공 중

*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: 정보제공자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접근·사용할 수 있게 하는 연결규격

〈 주요 제공 정보 〉

은행	▶ 수신계좌, 투자상품, 대출상품, 개인형IRP, 휴면예금 등	할부 금융	▶ 대출계약, 대출잔액, 거래내역, 운용리스 계약 및 거래내역 등
카드	▶ 포인트, 청구·결제 및 리볼빙, 승인상세, 대출상품, 선불카드 등	전자 금융	▶ 선불발행, 선불거래, 결제수단 등록, 결제내역 등
금융 투자	▶ 보유계좌, 잔액, 거래내역, 개별 상품, 연금계좌, 개인형IRP 등	공공	▶ 국세·지방세·관세 납세증명, 건강 보험 납부확인서 등
보험	▶ 보험계약, 자동차보험, 대출상품, 보장(담보), 개인형IRP, 휴면보험금	기타	▶ 통신, 대부, 보증보험, P2P업권의 거래 관련 정보

① 서비스 대상이 “개인”으로 제한 : 개인사업자 등의 편익 제한

-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가 “개인”으로 한정되어,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을 대상으로만 제공 가능

*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

- 시간·비용 측면에서 데이터 종합관리 서비스 수요가 큰 **개인 사업자·소상공인** 등으로 **서비스 확대 필요성** 지속 제기

* 개인사업자의 61%가 매출, 수수료 등 분산된 정보관리에 어려움 호소(23.4월 설문)

- 일부 금융사 등이 개인사업자 정보조회·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, **공통 인증·정보공유체계 부재** 등 서비스 제약

* 예) 캐시노트(한국신용데이터), 신한 소호메이트(신한은행), IBK BOX(기업은행) 등

② “보여주는” 마이데이터의 한계 : 제한적인 소비자 편익 제고

- 현행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데이터의 전송·조회 기능에 그쳐, 실제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탐색·인증절차* 등 필요

* 예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신용점수, 대출현황 등을 토대로 대환대출 상품 추천 → 이용자가 대출상품 비교 후 해당 금융사에 가서 직접 신청

- 이용자의 실질적 금융 편익을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기능이 단순 정보조회·분석을 넘어 **“실행” 단계까지 확장**될 필요

- 이를 위해 최근 혁신금융서비스(25.12월 지정)로 **AI 에이전트**를 활용한 “금리인하요구권 대리 실행” 서비스 등 시범운영 중

〈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 현황 〉

- ▶ **[혁신금융서비스 개요]**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**이용자의 동의를** 받아 소득·재산 증가 및 신용도 상승 여부 등을 분석하여 **적시에 금리인하요구권 대신 행사**
- ▶ **[규제특례]** ①신정법령상 명시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**고유·겸영·부수업무 외 금리인하요구권 대리행사 허용** ②최초 1회 동의 후 서비스 기간중 개인신용 정보제공 시마다 추가 동의를 받지 않도록 **개별 동의 예외 인정**
- ▶ **[서비스 현황]** '25.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받아 운영 중. '26.7월 기준 약 407만명이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**약 16.2만명이** 금리인하 혜택을 통해 **약 1,003억원(1인당 61만원)의 금리 경감** 효과

○ 한편, 해외에서도 데이터 전송요구권을 넘어 제3자에게 특정 금융행위를 대신 실행토록 지시하는 행위개시권을 법제화

➡ 단순 데이터 조회^{read}에서 **조치 수행^{write}**으로 지시 범위 확대

〈 마이데이터에 실행 기능을 추가하는 호주 데이터 행위개시권 사례 〉

- ▶ 호주는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소비자 데이터권리제도(Consumer Data Right, CDR)를 '20년부터 도입·운영 중이나, 다중 동의구조, 킬러 서비스 부재 등 구조적 한계
- ➡ AI 에이전트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행위의 실행을 지시할 수 있는 **행위실행 요구권(Action Initiation)** 법제화('24년 경쟁소비자법)

③ 데이터 활용 규제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에 한계

□ 현행 규제 체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

○ 계열사내 정보 공유·활용 제한, 엄격한 동의 원칙, 데이터 결합 절차 및 기준* 등으로 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인 다수

* 예) 겸업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정보와 본업으로 수집한 정보간 결합·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불명확

□ 한편, 의료·유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와의 연계·활용도 법적 기반은 마련('25.3월 개보법 개정)되었으나, 실무 작업 등에 시간 소요

* 각 산업별 표준(API 규격·인프라, 보안요건 등), 전송방법 및 절차 등 준비중

II. 개선방안

< 기 본 방 향 >

- ◆ AI 에이전트 등 혁신기술과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, 마이데이터가 개인뿐 아니라 **개인사업자** 등 전국민의 종합신용 정보관리 및 금융생활 지원 인프라로 안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1.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서비스 범위 확대

추진방안	세부 추진과제
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법적근거 마련	❶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 범위 확대 ❷ 대안신용평가 활용 위해 다양한 통합정보 제공 ❸ 별도 운영기준 및 행위규칙 마련

2. 통합관리에서 실행까지 My AI Agent 도입 서비스 기능 확대

추진방안	세부 추진과제
AI 에이전트 기반 마이데이터 도입여건 마련	❶ “적극적 권리행사 대행” 및 사전 일괄동의 허용 ❷ 겸영업무 열거주의→포괄주의(Negative)로 전환 ❸ 겸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

3.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 활용 데이터 활용 확대

추진방안	세부 추진과제
활용 정보확대/ 안전한 활용 기준 강화	❶ 가상자산, 정책금융 등 제공정보 확대 ❷ 계열사간 정보공유 활성화 ❸ 데이터 결합기준 명확화 ❹ AI 에이전트 활용시 기록·설명의무

1

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

- ◆ 정보전송요구권 주체 및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 자산관리·경영을 돕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

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^{본인신용정보관리업} 도입 근거 마련

- (현행) 전송요구권의 주체를 **개인**으로 한정하고,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개인에게 신용정보를 통합·제공하는 행위로 규정

* 법 §33의2① **개인**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·이용자등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**개인신용정보**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 가능

**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(법 §2. 9의2)

- **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소상공인·개인사업자에게 통합 신용관리·경영지원 서비스 제공 한계**

- (개선) 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신용정보 제공 등의 대상을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^[법 개정]

⇒ **개인사업자·소상공인 등에게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가능**

※ 법 개정시 기존의 승인받은 개인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 인·허가 없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업 영위 가능

〈 개인 외 기업 등 정보주체에 데이터 이동권을 인정한 사례 〉

- ▶ EU Data Act : 데이터 보유자의 **이용자**에 대한 **데이터 제공의무** 등 규정
(예: 사물인터넷 사용자(개인+기업)가 자신이 생성한 데이터를 손쉽게 무상제공 받을 권리)
- ▶ EU Digital Market Act : 대형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**사업자의 데이터 접근권 보장 의무** 등 규정(예: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접근권 보장 등)
- ▶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(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) ①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...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...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대안신용평가 활용을 위해 다양한 정보의 통합 제공

- **(현행)** 현행 마이데이터는 개인신용정보만 통합·제공하여 개인 사업자의 사업장 관련 정보 통합·조회 서비스 구현에 한계
- **(개선)**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사업자 명의의 금융, 상거래, 공공정보 등을 통합·제공하여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등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 대상정보 범위 확대 [시행령 개정]

〈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(안) 〉

구분	정보제공범위
①금융정보	▸ 여·수신정보, 무역금융정보, 카드정보, 보험정보 등
②상거래정보	▸ 매출정보, 결제금액, 거래품목 정보(13개 업종분류) 등
③공공정보	▸ 국세·지방세·4대보험 등 납부내역, 사업자등록정보 등
④기타정보	▸ 전기·수도·가스요금 등 공과금 납부내역, 통신비 등

① (금융정보) 업권별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상품* 정보

* (은행) 개인사업자대출 (카드) 개인사업자전용카드 (보험) 개인사업자보험 등

② (상거래정보) 사업자(상호, 사업자등록번호), 결제금액, 거래품목 (13개 업종분류*) 등 세부 정보 제공

* ①가전/전자, ②도서/문구, ③패션/의류, ④스포츠, ⑤화장품, ⑥아동/유아, ⑦식품, ⑧생활/가구, ⑨여행/교통, ⑩문화/레저, ⑪음식, ⑫e쿠폰/기타서비스, ⑬기타

③ (공공정보) 세금신고정보, 휴·폐업 정보 등 사업장 업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

④ (기타정보) 국세청(홈택스), 행안부(위택스) 등 연계로 공과금 납부내역 등 제공

- 개인신용정보 외 정보에 대해서는 API 구축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사전고지된 안전한 스크레이핑 방식 수집 허용 [법 개정]

* 수집 정보, 인증 방식, 이용자 동의 및 사후 고지 등 「안전한 스크레이핑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가이드라인」 마련 추진('26. 하반기중)

③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기준 및 행위규칙 마련

□ **현행 개인 마이데이터의 전송방식 및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의 개발비용 부담 최소화**

① (정보전송) 정보제공기관은 직접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전송이 원칙이나, 중소형 기관은 중계기관 이용 허용

② (식별·인증) 대표자 개인의 연계정보(CI)와 개인용 인증서를 적용하되,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 활용하여 개인사업자 식별

* 공동사업자의 경우, 대표자를 정하여 해당 대표자의 연계정보(CI)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정보 전송요구 및 조회

③ (개인사업자 상태조회) 사업 양·수도, 휴·폐업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, '마이데이터 종합포털(신정원)'에서 영업상태 검증 지원

* 신정원에 사업자 성명, CI, 사업자등록번호 등 참조DB 구축 예정

** 단, 휴·폐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(예: 60일) 동안, 별도의 추가 인증 및 신청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정보 조회를 허용

④ (비용 과금) 기존 과금체계와 동일하게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과금·배분 금액을 산정하되,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과금이 개인 마이데이터 과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별도 운영*

* 총 원가를 개인사업자/개인 원가로 구분 후 각각 정기적 전송비율을 적용

□ **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유형 관련 행위규칙 별도 신설**

○ ① 내부자정보 이용금지, ② 영업상 비밀 등 유출 금지, ③ 데이터 기반 경쟁개입 금지 등 사업장 정보 부당 활용 금지

* ① 예) 고객의 매출·거래·대출 정보 등 이용해 특정 업체에 투자

② 예) 경쟁사업자 비용절감 컨설팅을 위해 특정고객의 원재료 구입처 제공

③ 특정지역 매출, 수익성 분석 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창업·투자

2

통합관리에서 실행까지, My AI Agent 도입여건 마련

- ◆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한 서비스로 고객의 금융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 확대

① “적극적 권리행사 대행” 및 제한적 범위내 사전 일괄동의 허용

- (현행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열람 등 자기정보 결정권 구현 관련으로 제한

* 법 §11의2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3.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
(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, 설명요구권, 동의철회, 열람 및 정정청구 등)

- (개선)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관련법령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대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^{부수업무} 확대 [법 개정]

- 마이데이터가 AI 에이전트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·시간이 부족한 이용자의 “대리인”으로서 지시받은 행위 수행 가능
- 권한 대리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 내*에서 목적·범위·방법·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전 일괄동의 허용 [법 개정]

* ‘서비스 제공 전반’, ‘제휴 서비스 일체’와 같이 모호한 포괄적 동의는 금지

- ▶ [대리업무 예시] 금리인하요구권(은행법 §30의2), 채무조정요구권(개인채무자보호법 §35),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(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§30의2), 정책자금 신청, 대환대출 신청, 신용카드 수수료·연회비 감면 요구, 숨은 보험금 탐색·자동청구 등



* 예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 후, 정보주체의 지시에 따라 관련서류(세금납부, 소득증빙 등)를 직접 구비하여 정책자금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업무 수행

②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겸영업무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

- (현행)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후, 신용정보법령상 열거된 겸영업무 영위 가능(해당 개별법률 승인 별도)

※ [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겸영 가능한 업무] 투자자문업·투자일임업, 전자금융업, 금융상품자문업, 신용정보업, 대출중개·주선업, 금융회사의 고유·겸영·부대업무, 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, 온투업, 본인확인기관 업무, 금융상품판매 대리·중개업, 데이터전문기관 업무, 가맹점모집인 업무

- (개선) 겸영 가능한 업무의 원칙을 제시하는 포괄주의(Negative) 방식으로 전환하고, 이해상충 등 겸영불가 여부*만 심사[법 개정]

* ①이해상충 가능성, ②개인정보 오·남용 가능성, ③정보주체 이익 저해 가능성, ④고유업무의 독립성·공정성 훼손 가능성, ⑤법령상 겸영이 가능한 업무인지 등

- 현재 열거되어 있지 않은 업무*도 타 법령상의 필요한 인·허가 및 승인을 받고, 겸영불가 사유에 미해당시 영위 가능

* 예)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,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관리기관 등

- 다만, 개인정보의 집중활용 측면에서 겸영이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(예: 대부업, 채권추심업 등)에 한해서만 명시적으로 겸업 금지

③ 겸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

- (현행) 모든 겸영·부수업무의 영위를 위해서는 사전신고 필요

- (개선)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절차 간소화 [법 개정]

* 예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방송·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영위하는 경우(비금융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업무)

3

마이데이터의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데이터 활용 확대

- ◆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·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되,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관리 기준 강화

① 가상자산, 정책금융 등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범위 확대

- (현행) 현재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가 주로 금융업권* 정보에 집중되어 가상자산, 정책금융 등 통합조회에는 한계

* 은행, 카드, 금융투자, 보험, 전자금융, 할부금융, 보증보험, 통신, P2P, 대부

- (개선) 가상자산, 정책서민금융 관련 정보 등을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이 통합 제공하는 정보 범위에 추가·확대 [시행령 개정]

-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, 정책금융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서비스 등 지원 가능

② 지주 계열사 등의 안전한 정보공유 허용

- (현행) 지주사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있어도 계열사간 정보의 공유·활용의 제약*으로 데이터 분석·활용에 한계

* 지주회사법 §48의2 내부경영 목적外 계열사간 정보공유 금지 등

- (개선) 개인신용정보 “공동활용” 제도 도입, 특정 목적·범위 내에서 계열사, 전략적 제휴사 등의 정보공유 허용 [법 개정]

- 활용 목적, 정보 항목, 관리책임 등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후, 지주내 계열사 등이 정보의 공동이용자로서 대고객 서비스 제고 등에 데이터 활용

* 日 개인정보보호법 “개인정보 공동이용”(§27⑤3.) : 공동이용 사실, 정보항목, 공동이용자 범위, 이용목적 및 관리책임자를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경우, 특정인과의 공동이용은 제3자 제공 아님

③ 마이데이터 사업자 데이터 결합 기준 명확화

- (현행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수집한 정보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써 수집한 정보 간의 결합·분석에 대한 기준 불명확
 - 데이터 결합·분석 추진시, 사업자가 사안별로 해석·판단
- (개선) 정보주체의 동의 및 고지, 결합정보 관리 및 보안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, 정보간 자유로운 결합·분석 허용
 - 「(가칭) 마이데이터 결합 및 활용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데이터 보안요건 및 결합기준 등 제시

④ AI 에이전트 활용 마이데이터의 기록 및 설명의무

- (현행) AI 에이전트 활용한 서비스 제공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명확한 세부 행위규칙 미비 (※ 자율적으로 「AI 가이드라인」 적용)
- (개선)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할 기록·설명 의무 신설 [시행령 개정]
 - 예) 대리실행 소과정 기록·보관 의무, 실행 사유·수행내용 및 결과 등 소비자 제공 의무, 책임자 지정·고지 의무 등

▷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AI 에이전트 활용시 기록·설명 의무 예시

- ❶ (대리실행의 사유) 최근 카드대금 연체 해소로 이용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여, 기존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저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가심사를 대리신청
 - ❷ (수행내용) ○○금융회사의 A상품, △△금융회사의 B상품에 대해 대출 가심사를 신청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이용자의 소득정보, 카드이용내역,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 제공되었음
 - ❸ (결과) ○○금융회사의 A상품에 대한 가심사 결과는 "대출 가능"이며, 예상 금리는 연 5.1%, 한도는 3천만원으로 예상, △△금융회사의 B상품에 대한 가심사 결과는 "대출 불가"로, 제1금융권 대출건수 및 신용한도 대비 리볼빙 잔액 비율이 부정적으로 작용

V. 향후 추진계획

①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 및 신속한 국회 통과 지원('26.下~)

①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 실무 워킹그룹 구성*·운영('26.下~)

* 금융위·금감원, 금융협회, 마이데이터 사업자, 신정원·보안원 등

② 정보 표준화 및 API 규격 개발 등 워킹그룹 운영(법 통과시)

② 법 통과 前이라도 필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시범운영 실시 가능('26.下~)

< 세부 과제별 주요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>

구분	세부과제	조치사항	일정
1.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법적근거 마련	① 전송요구권 등 근거 마련	신용정보법 개정	'26.下~
	② 다양한 정보 통합 제공	시행령 개정	'27.上
		안전한 스크레이핑 가이드라인 마련	'26.下
	③ 운영기준·행위규칙 마련	시행령 개정	'26.下 '27.上
2. My AI Agent 도입 여건 마련	①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업무범위 확대 및 사전 일괄동의 허용	신용정보법 개정	'26.下~
	② 겸영업무 포괄주의로 전환		
	③ 겸영·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		
3.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확대	① 가상자산·정책금융 등 제공정보 확대	시행령 개정	'27.上
	② 계열사간 정보공유 활성화	신용정보법 개정	'26.下~
	③ 데이터 결합기준 명확화	가이드라인 마련	'26.下
	④ AI 에이전트 활용시, 기록·설명 의무 신설	시행령 개정	'27.上

※ 상기 추진일정은 신정법 개정 시기 및 실무TF 운영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